

연구윤리 확보 규정 및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관한 규정(3-6-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학술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예방을 도모하며, 연구부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본 대학교내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가타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 각호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지원 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또는 관계기관(부서)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⑦“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본교 소속의 연구자와 본교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결과 회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위원장 및 간사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증시효) ①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내용) ①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예비조사는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3.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그 직을 면한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①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본위원회에 통보하고 본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 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당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재심이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최종보고서)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제18조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정관 또는 대학교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본조사의 기록과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조사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제18조의 보고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관련 자료를 요구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장 보 칙

제23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